#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의안 번호 | 5251 |
|---|---|

제출일자 : 20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가.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18.12.31)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위탁사무 기준) 및 제5조(위탁사무 대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등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를 市 직영 운영 시 별도의 전문인력 채용 등 사업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로 市 재정부담 증가
- 따라서, 장사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市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운영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관리·운영 전반
○ 위탁내용
- 묘지(매장·개장 포함)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 묘지 묘적부 관리 및 각종 공부의 작성·유지 관리
- 묘지 각종 시설 안전관리 및 성묘 안전대책 수립·시행
- 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재정적 업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 규　　모

| 시 설 명 | 소　재　지 | 면적(㎡) | 설치일 | 봉안 및 안장능력 |
|---|---|---|---|---|
| 동명가족묘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산25 | 931,627 | '35.04.20 | 2,870 |
| 동명공동묘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145-1 | 760,960 | '64.06.11 | 2,140 |
| 성서공동묘지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76길 122 | 144,724 | 1937년 | 3,222 |

○ 위 치 도

- 동명가족묘지

- 동명공동묘지

- 성서공동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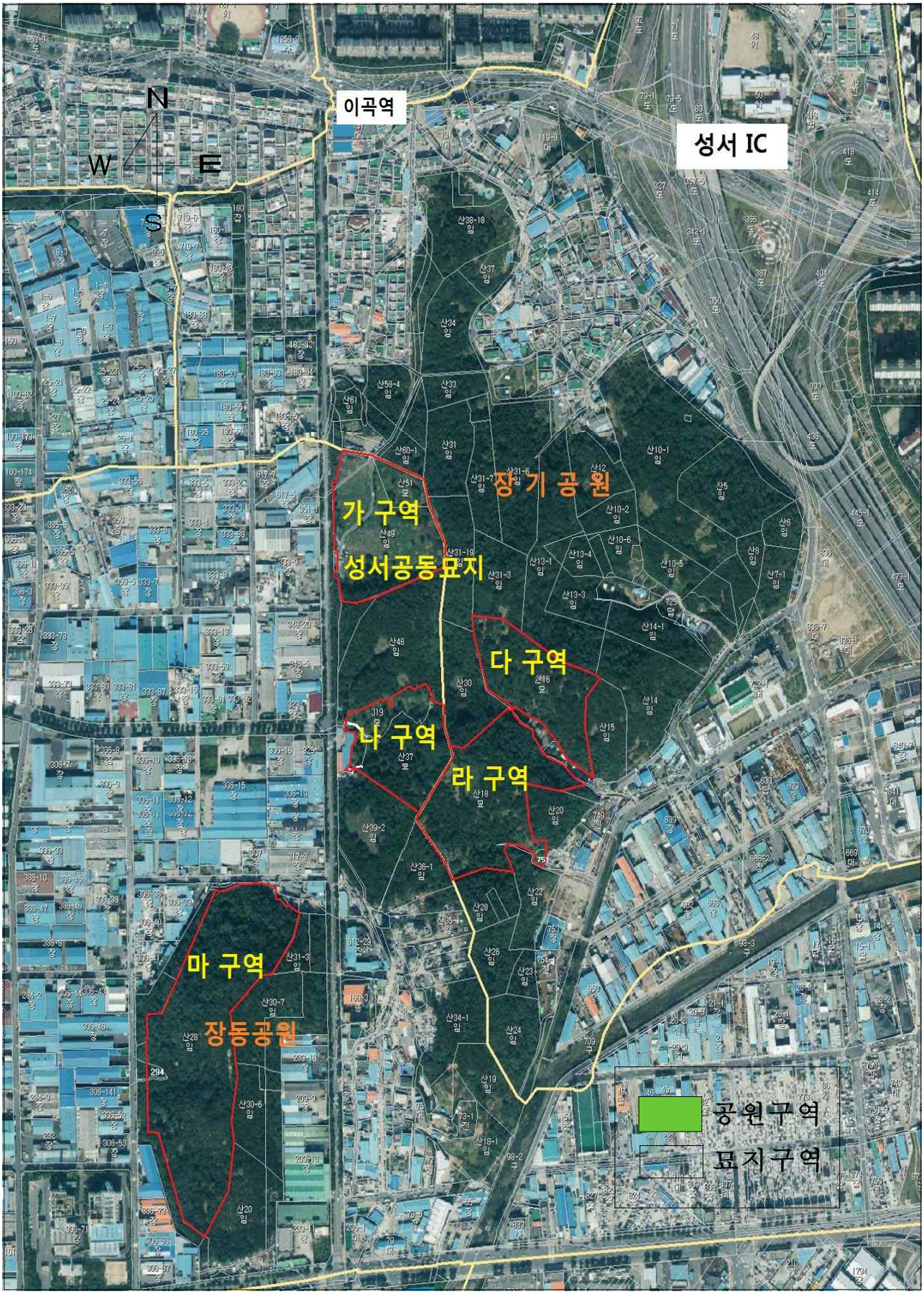

마. 민간위탁기간 : 2019.1.1.~2021.12.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18년 69,000천원)
○ 산출내역

| 구분 | 사업비 | 산 출 근 거 | 비고 |
|---|---|---|---|
| 합 계 | 69,000 | | |
| 인건비 | 54,000 | - 인건비 (2명) 54,000<br>·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포함 | |
| 관리비 | 15,000 | - 공공요금( 전기, 수도 등) 및 일반운영비 15,000 |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2018년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 총점 65.4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위탁사무 기준)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 붙임 1 〉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 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서류와 장비·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시에 무상귀속한다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자치구별 균형분포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전문가 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붙임 2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재위탁 운영계획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시립공원묘지와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위탁운영 기간('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 추진방향

○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묘지운영 전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운영위탁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시립공원묘지 위탁운영과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위탁운영을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위탁운영으로 통합 1개 위탁법인 선정

○ 수탁법인 선정은 학계, 복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 위탁개요

위탁시설

('18. 9. 30. 기준)

| 시설명 | | 위치 | 면적(㎡) | 설치일 | 봉안 및 매장현황 | | | 수탁기관(수탁기간) |
|---|---|---|---|---|---|---|---|---|
| | | | | | 계 | 봉안 및 매장기수 | 봉안 및 매장여력 | |
| 공설봉안당 | 계 | | 1,851 (560평) | | 30,100 | 27,482 | 2,618 | (재)현대공원 대표 김석엽 ('14.04.16~'18.12.31) ※ '18년 위탁비 : 182.5백만원 |
| | 제1추모의집 |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 686 (207평) | '74.05.15 | 12,488 | 9,879 | 2,609 | |
| | 제2추모의집 | | 1,165 (352평) | '02.08.28 | 17,612 | 17,603 | 9 | |
| 공설묘지 | 계 | | 1,926,481 | | 12,454 | 12,067 | 387 | |
| | 시립공원묘지 |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 89,170 (27,021평) | '74.04.16 | 4,222 | 3,835 | 387 (기예약분) | |
| | 동명가족묘지 |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산25 | 931,627 (281,816평) | '35.04.20 | 2,870 | 2,870 | - | (재)현대공원 대표 김석엽 ('16.08.01~'18.12.31) ※ '18년 위탁비 : 65.5백만원 |
| | 동명공동묘지 |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145-1 | 760,960 (230,189평) | '64.06.11 | 2,140 | 2,140 | - | |
| | 성서공동묘지 | 달서구 달구벌대로 267길 122(장동) | 144,724 (43,779평) | 1937년 | 3,222 | 3,222 | - | |

〈그 간 수탁 현황〉

| 시설명 | 수탁 기간 | 수탁법인명 | 비 고 |
|---|---|---|---|
|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 5차 : '14. 4.16 ~ '18.12.31(4년8월) | (재)현대공원 | |
| | 4차 : '09. 4.16 ~ '14. 4.15(5년) | (재)현대공원 | |
| | 3차 : '04. 4.16 ~ '09. 4.15(5년) | (재)현대공원 | |
| | 2차 : '94. 4.16 ~ '04. 4.15(10년) | (재)현대공원 | |
| | 1차 : '74. 4.16 ~ '94. 4.15(20년) | (재)현대공원 | |
|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 3차 : '16. 8. 1 ~ '18. 12.31(2년5개월) | (재)현대공원 | |
| | 2차 : '11. 8. 1 ~ '16. 7.31(5년) | (재)현대공원 | |
| | 1차 : '06. 8. 1 ~ '11. 7.31(5년)<br>※ '06. 8. 1 이전 동명묘지 북구, 성서묘지 달서구에서 관리 | (재)현대공원 | '06.5월 시의회 위탁동의 |

## 위탁사무

| 위 탁 시 설 | 위 탁 사 무 |
|---|---|
|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 ◦공설묘지(매장·개장 포함), 봉안당·영안정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br>◦공설묘지, 봉안당, 영안정 묘적부 관리 및 각종 공부의 작성·유지 관리<br>◦공설묘지, 봉안당 등 각종 시설 안전관리 및 성묘 안전대책 수립·시행<br>◦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재정적 업무<br>◦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 ◦공설묘지(매장·개장 포함)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br>◦공설묘지 묘적부 관리 및 각종 공부의 작성·유지 관리<br>◦공설묘지 각종 시설 안전관리 및 성묘 안전대책 수립·시행<br>◦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재정적 업무<br>◦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관리·운영 전반

○ 위탁기간 : '19.1.1~'21.12.31까지(3년)

○ 위탁조건

-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대·재위탁 금지
- 수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협약으로 정함

○ 추진절차

- 계획수립→시의회 동의(안) 상정→공개모집→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위·수탁협약 체결→시설 인계·인수 및 위탁 개시

## 공개모집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11.30～12.10(11일간)
  ※ 응모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5일이상) 실시
-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내 주된 사업장을 둔 묘지 운영 전문 비영리법인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18.12.3～12.10(8일간)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803-6261)
- 제출방법 : 방문 접수(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A4용지, 분량 제한 없음) 및 요약분(A4용지 4매이내) 각 10부
  • 법인소개서(연혁, 설립목적, 조직, 사업영역 등), 법인의 등기부등본·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각 10부
  • 2017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사본 각 10부
  • 시설종사자 계속고용확약서 1부
  • 기타 사업계획의 실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0부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하여 날인 후 첨부

## 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12.3(월) 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공원묘지관리사무실(☎ 053-312-0348)

○ 내 용 : 위·수탁 개요, 신청서 작성방법, 평가·선정방법 등

## 수탁기관 선정·발표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25) : 묘지사업 수행기간, 전문인력 확보, 묘지사업 규모)
  • 재정능력(15) : 법인자산 보유현황, 연간 수입현황
  • 시설운영계획(60) : 조직·인력활용계획, 시설관리계획, 묘적부 관리계획 등
- 선정방법
  •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모일 경우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법인 선정
  • 재공고 후 1개 법인만 응모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만 심사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수 : 6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1명) : 보건복지국장
  • 위촉직(5명) : 교수, 복지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위원선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 모집공고 : '18.11.30～12.7(7일간)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시행

○ 결과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향후 추진일정**

-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상정 : '18.11월
- ❍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18.11.30～12.10
  - 1개 법인 신청 및 신청법인 없는 경우 재공고 : '18.12.12～12.17
- ❍ 현장설명 : '18.12.3(월)
- ❍ 심의위원 모집공고 및 접수 : '18.11.30～12.7
-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8.12.19(목) 예정
- ❍ 위·수탁 협약체결 : '18.12월